

「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목적, 정의, 설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3조)
-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 제5조)
- 기금의 관리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 ~ 제8조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 ~ 제12조)
-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숙소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 ~ 제19조)
-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0조 ~ 제2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
- 합 의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거복지용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을 권역별로 취득하여 저연차 직원 위주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제공하여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지원대상 선정,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소속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